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6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일부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 등「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관련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폐지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1항제1호가 신설되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말까지 규정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 38조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조문정리(안 제3조)

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13. 05. 06 ~ 05. 26) : 의견없음

마.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13. 05. 08) : 가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제외

사.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2013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
3.「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